



동아특수화학(주)

비윤리 행위 신고 규정

승인자	총무 이한경 차장
제정	2025년 12월 19일
개정	최초 제정
문서 관리 번호	DGP-0302
문서 관리자	총무 이한경 차장



1. 목적

이 비윤리 행위 신고 규정은 회사의 모든 직원이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하고, 이를 통해 회사의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, 비윤리 행위를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.

2. 규정의 적용 범위

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직원, 임원, 그리고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된다. 모든 직원은 비윤리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한다.

3. 신고 대상 행위

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:

- 법규 위반
- 회사 정책 및 윤리 규정 위반
- 이해 상충 행위
-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
-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
-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
- 기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

4. 신고 절차

1) 신고 방법

- 직접 신고: 직원은 상사나 인사부서에 직접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.
- 익명 신고: 직원은 익명으로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회사는 온라인 또는 익명 신고 제보함을 운영한다.
- 서면 신고: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총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.



2) 신고 내용

신고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:

-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
- 비윤리 행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
- 관련된 인물 및 증인
- 기타 참고 자료 및 증거

3) 신고자의 보호

- 비밀 유지: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, 신고 내용은 기밀로 유지된다.
- 보복 금지: 신고자는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.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확인될 경우, 관련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.

5. 조사와 조치

1) 조사 절차

- 초기 조사: 신고된 비윤리 행위는 인사부서 및 윤리책임담당자가 초기 조사를 실시한다.
- 심층 조사: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층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- 조사 기간: 모든 조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, 조사의 진행 상황은 신고자에게 적절히 통지된다.

2) 조치

- 조사 결과 통지: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.
- 징계 조치: 비윤리 행위가 확인된 경우, 관련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.
- 개선 방안 마련: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.

6. 기타

-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
- 이 비윤리 행위 신고 규정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될 수 있다. 직원은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2025. 12. 19

동아특수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병철

